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1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정준호 · 안도결 · 조인철

박지원 · 문금주 · 박균택

이개호 · 정진욱 · 전진숙

양부남 의원(10인)

###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 · 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한다.  
② 정부의 직할 하에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이하 “광주전남자치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 구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광주광역시 일원, 전라남도 일원

제3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통합하여 설치된 광주전남자치도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전남자치도의 장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광주전남자치도의 의회의원은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자치도의 의회의원 보궐선거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전남자치도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광주전남자치도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④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전남자치도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광주전남자치도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 이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광주전남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항 전단에 따라 광주전남자치도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광주전남자치도의 장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⑧ 제4항 전단에 따라 광주전남자치도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광주전남자치도에서 선출하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광주전남자치도의 명칭 뒤에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시도에 설치된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광주전남자치도의 시·군·구로 본다.

② 광주전남자치도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군·구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광주전남자치도에 설치된 시·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종전시도 소속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광주전남자치도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④ 광주전남자치도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도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광주전남자치도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⑤ 종전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광주전남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광주전남자치도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광주전남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종전시도의 조례·규칙은 광주전남자치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광주전남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⑧ 광주전남자치도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광주전남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광주전남자치도의 주소로 본다.

⑨ 종전시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광주전남자치도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주전남자치도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